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31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 · 양금희 · 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, 자료제 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 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는"을 "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"를 "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는"을 "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는"을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"를 "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"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 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 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27조(공개정보 검색 등) ① 공 제27조(공개정보 검색 등)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---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 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 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 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.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----- 공정거래위원회, 시 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 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청장----아니 된다.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 ③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 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 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4	제3	항에	따라	<u> </u>	<sup>2</sup> 정기	<u> </u>	원
<u>회</u>	로부	<u>터</u> 지	- 显	요구	를	받은	기
관여	기나	단최	는	정도	강한	사유	-가
없	으면	자료	. 제	출이	나	자료	공
유	를 ブ	] 부하	-여사	는	아니	된다	1.

4	<u>공</u>	정거래위원
<u>회</u> , 시·도	지사 또는	<u> - 시장·군</u>
<u>수・구청장</u>	으로부터	